

지상4층 창호유리가 떨어져 근로자 맞음

재해개요

발생형태	부상 정도	연령	동종경력
맞음	사망 1명	만53세	-

2022. 09.07.(수) 11:15경 부산 동래구 소재 OO동 상가
신축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지상1층 주출입구에 야
적된 석재를 손수레에 싣던 작업 중 지상4층에서 낙하
한 창호유리*(임시 설치상태)에 맞아 사망함.

- * 창호유리 제원
- (품명) 로이복층유리, (무게) 약153kg/장
 - (크기 및 규격) 2,050 x 2,530mm, 24T



작업상황

비정상 작업

- (정 상) ① 설계도서에 기초한 시공상세도 및 시방서를 작성 및 준수
② 낙하 위험 장소 내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등 위험 방지 조치 실시
- (비정상) ① 설계도서에 기초한 시공상세도 및 시방서 미작성 및 미준수
② 낙하 위험 장소 내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하지 않아 타 공종(석재) 근로자가 출입

발생원인

1 직접원인

- (접착성능 부족) 창호유리 부착 시 유리에 오일, 그리스 등의 이물질 제거 등 청소 작업 미흡
또는 창호유리에 적정 압력(15psi)을 가하지 못해 접착 성능이 부족
- (출입금지 미흡)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출입 구역의 설정, 보호구 착용
등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미실시

2 기여요인

- (작업계획 미작성) 창호유리 설치 등 중량물 취급 작업 시 낙하물에 의한 근로자 위험에 대한
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미작성
- (시공상세 미작성) 설계도서에 기초한 시공상세도 및 시방서 미작성

예방대책

1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철저

-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, 보호구의 착용
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.

2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및 근로자 주지 철저

- 사업주는 창호유리 등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낙하물에 의한 근로자 위험 등 예방대책을
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주지하여야 함.

3 시방서의 작성 및 준수

- 유리공사 표준시방서(국토교통부, KCS 41 55 09 : 2021)에 따르면 유리의 제작, 시공에 앞서
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상세도 및 시방서를 작성하도록 명시한 바,
- 공사개요, 범위, 관리체제, 공정표, 사용재료의 명칭, 규격, 제작자, 제작공장, 제작, 시공방법 등
을 포함한 시방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.

※ 본 MPS는 동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이 재해 발생 상황과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